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65				제출년월 제 출	_		
□ 제약	반이유							
	만 나이 정착	을 위한	「행정기본	법」및	「민법」	의 개기	정법률	시행
('23.6.28.)에	따라 안	산시 조례를	를 일괄 정	g 기비하여	행정의	효율성	증진
□ 주.	요내용							
○ 정	비대상 : 14	개 부서	/ 20개 3	존례				
– मृ	난 나이 표시어	l서 "만'	" 삭제					
□ 개경	성조례안 :	【붙임	1]					
□ 신	• 구조문대비]亚:	【붙임 2]	l				
□ 관계	ᅨ법령발췌서] : 【붙	[임 3]					
□ 관력	변사업계획서] : 해딩	남사항 없	유				
□ 예4	반수반사항	: 해당시)항 없음					
	번예고(결과) 입법예고 : 20			23. 4.	24. (21	일간)		
기	ት 참고사항							
े दं	현행조례 :	【붙임 4]	1					
_ l	방침결정문 :	【붙임 5]]					

[붙임 1]

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만19세 이상 만24세"를 "19세 이상 24세"로 한다.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24세"를 "24세"로 한다.

제2조(「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"만 60세" 를 "60세" 로 한다.

- 제3조(「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본문 중 "만 65세"를 "65세"로 한다.
- 제4조(「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만 65세"를 "65세"로 한다.
- 제5조(「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만 85세"를 "85세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만 85세"를 "85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만 100세"를 "100세"로 한다.

- 제6조(「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호 중 "만65세"를 "65세"로 한다.
- 제7조(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만 5세"를 "5세"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"만 5세"를 "5세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만 6세"를 "6세"로 한다.

제8조(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본문 중 "만 65세"를 "65세"로 한다.

제9조(「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만 6세에서 만12세"를 "6세에서 12세"로 한다.

제10조(「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 중 "만 6세"를 "6세"로 한다.

제11조(「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교통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호 중 "만5세"를 "5세"로 한다.

제12조(「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자전거이 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"만13세"를 "13세"로 한다.

제13조(「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원민 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17세"를 "17세"로 한다.

제14조(「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15세"를 "15세"로 한다.

제15조(「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"만 26세"를 "26세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6조(「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7호 중 "만65세"를 "65세"로 한다.

- 제17조(「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대 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"만65세"를 "65세"로 한다.
- 제18조(「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호 중 "만 60세"를 "60세"로 한다.
- 제19조(「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·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"만 2세"를 "2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"만 18세"를 "18세"로 한다.
- 제20조(「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중 "만11세 이상 만18세"를 "11세 이상 18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,	소관 실·과	의정법무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의정법무과장 이 선 희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정협력팀장 백 인 호
자	담 당 자 성명전화	김 정 화 (행정 2719)

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[별지 제1호서식]

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(이용자·운전자작성)

			이용자 자격명					
0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_		
용 자	연 락 처		주 소					
운 전	성 명		생년월일					
운 전 자 1	연 락 처		면허번호(종)				(종)
운 전	성 명		생년월일					
운 전 자 2	연 락 처		면허번호(종)				(종)
	희망사용기간 (주말 및 공휴일)	년 :	월 일 ~ 년	월	일	까지		
	차량수령희망장소							
	행 선 지		사용목적					
내 용	탑승인원	<u>ප</u> 0	문화시설이용					
	기타요청사항							
	차량수령장소 : 안	산시가 정하는 수령	· 당소					
I	l .							

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.

<이용자 등의 준수사항>

- 1.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·운전금지.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(사망)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 사유를 안산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이용자 (운전자)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
신청자:	(人	명

안산시장 귀하

<고유식별정보 수집>

항 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	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	3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(이하 "생생카셰어"라 한다)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안산시가 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자: (서 명)

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(필수)>

항 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신청자),		
생년월일(운전자), 운전면허번호(운전자), 행선지,	공용차량의 공유이용	3년
이용목적		

- ※ 주민등록번호는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.
- ※ 위치정보기록
-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, 차량사고, 긴급구난, 통계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.
- ※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생카셰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안산시가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자: (서 명)

<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>

제공 기관	제공 항목	제공 목적	이용기간
안산시 각 시·군 주민부서, 경찰청, 보건복지부	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 호(신청자), 운전면허번호 (운전자)	이용자 자격확인, 운 전자의 자격 확인, 범칙금 및 과태료 이 용자 납부	3년

※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, **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.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자: (서 명)

생생카셰어 차량 운행일지

20	년 ·	월 (일 (요잍	<u> </u>) ~	월	일	(요.	일)		담당지	· 팀	장 결 재
차	량번호					전일누	·계			km	유	전일양 급유량		l(%)
신 청 자	주 소 성 명					금일운	·행			km	류 수 불	- (충량 (충량 상비량		ℓ(%) ℓ(%)
	(연락처) 선자성명(연	(01 - 년락처)	운전지	- 나성명) (연락처)	누 7	ᅨ			km	현 황	남은양		l(%)
2	슬 차자		용무		목적지	차	량 인	수		차	량 입	고	서	명이
						일		시	분	잍	<u>.</u> 시	분		

그 밖에 (건의)사항

이용자(운전자) 준수사항

- 1.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운전은 26세 이상이며 시장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·운전금지.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·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.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- 7. 차량수령시간(수령일) : 08:00~12:00 차량반납시간(반납일) : 14:00~18:00
- 8. 이용자(운전자)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(운전자)의 부담으로 한다.

│※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

- 1.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(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)
- 2.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(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,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)
- 3.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
- 4. 보험회사 사고접수(○○○○, ○○○○-○○○○)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
- 5. 사고내용 보고 : 🗗 000-0000-0000, 0000, 0000

공용차량 이용 확인서(이용자·운전자작성)

			_						
				차량수령장소					
01	성 명			생년월일					
용 자	연 락 처			주 소					
운 전	성 명			생년월일					
자 1	연 락 처			운전면허번호					
운 전	성			생년월일					
자 2	연 락 처			운전면허번호					
	사용기간	년 :	월	일 ~ 년	월	일))	- 天	
	차 종			차 량 수 령		일	시	분	서명
	(차량번호)			차 량 반 납		일	川	분	서명
내	관광지배정			카 드 수 령		일	八	분	서명
용	(이용카드번호)			카 드 반 납		일	八	분	서명
	행선지			사용목적					
	탑 승 인 원	명		특이사항					

<이용자 등의 준수사항>

- 1.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자(운전자)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·운전금지.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(사망)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(운전자)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의 사유를 안산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(운전자)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
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이용자: (서 명)

안산시장 귀하

[붙임 2]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 "청년"이란 <u>만19세 이상 만24세</u>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2. ~ 4. (생 략) 	1 <u>19세 이상 24세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급대상) 청년기본소득의 지급	제4조(지급대상)
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	
두고 있는 <u>만24세</u> 청년으로서 다음	<u>24</u> মা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지급한다.	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) ① 단	제5조(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) ① -
원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<u>만 60세</u> 이	<u>60세</u>
상 성인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	
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	
다. 다만,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한을	
두지 않을 수 있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(「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원대상)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	제2조(지원대상)
권(이하 "이용권"이라 한다) 지원	
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안산시(이하	
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	
는 <u>만 65세</u>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	<u>65세</u>
권자를 말한다. 다만, 노인주거복지시	
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	
생활자와 장기입원자(90일 이상), 정	
부나 자치단체, 그 밖의 시설로부터	
목욕 및 이·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	
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	

제4조(「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 1. "노인"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<u>만 65세</u> 이상의 사 람을 말한다. 2. (생 략) 	1

제5조(「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	제2조(정의)
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장수노인"이란 「주민등록법」	1
상 <u>만 85세</u>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	<u>85세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급기준 및 지급액) ① 장수수당	제4조(지급기준 및 지급액) ①
은 월 3만원으로 하며, <u>만 85세</u> 가 되	<u>৪</u> 5ম <u> </u>
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	
②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	②
예산의 범위에서 장수노인 중 ${ m theta} 100$ 세	<u>1</u>
가 되는 날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	<u>00세</u>
지급할 수 있다.	

제6조(「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우선 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제7조의 사업을	제8조(우선 지원대상)
우선 지원 할 수 있다.	
1. <u>만65세</u>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	1. <u>65세</u>
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	
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	
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	
태, 경제상태, 사회관계 접촉빈도	
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	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	제2조(용어의 정의)
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	
다.	
1. · 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"영유아 양육비"(이하"양육	3
비"이라 한다)란 <u>만 5세</u> 이하인	<u>5세</u>
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	
원금을 말한다.	,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양육비) ① (생 략)	제8조(양육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양육비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<u>만 5세</u>	② <u>5세</u>
까지로 한다. 다만, <u>만 6세</u> 생일이	<u>6세</u>
도래하는 첫 달까지 지급한다.	

제8조(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 ①・②	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	③
로 하되, 원장이 <u>만 65세</u> 까지 남은	<u>65세</u>
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, 위탁기간을	
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	
할 수 있고,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	
중 일때에는 그 위탁기간의 종료일을	
전 학년도의 종료일로 하여 위탁기간	
을 조정할 수 있고, 위원회의 심의를	
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.	
단,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.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9조(「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돌봄 아동"이란 안산시(이하	1
"시"라 한다)에 소재한 「초·중	
등교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	
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	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6세에서</u>	<u>6세</u>
<u>만12세</u> 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	에서 12세
다.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「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입장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	제8조(입장제한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	
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호자와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	2 <u>6</u> 利
이하의 어린이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「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이용자의 제한) 시장은 시설 또	제7조(이용자의 제한)
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	
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	
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람에게는	
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<u>만5세</u>	2 <u>5</u> 세
이하의 어린이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「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사용대상) 무인공공자전거의	제24조(사용대상)
사용 대상은 <u>만13세</u> 이상의 자전거	<u>13</u> মা
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	
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	

제13조(「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편성기준) 지원민방위대는 안산	제4조(편성기준)
시(이하"시"라 한다) 관할구역 내	
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<u>만17세</u> 이	<u>17세</u>
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	
을 고려하여 편성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「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주민자치회의	제7조(위원의 자격) ①
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<u>만15세</u>	<u>15세</u>
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「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운전자의 자격) ① 공용차량을	제11조(운전자의 자격) ①
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를 위하여	
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	
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	
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용하려는 날 현재 <u>만 26세</u> 이상	4 <u>26세</u>
인 사람	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■ 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[별지 제1호서식]

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(이용자:육전자작

성)

				이용자 명	자격				
이 용	성 명			주민등록	(번호		-		
자	연 락 처			주	소				
운 전	성 명			생년월	일				
자 1	연 락 처			면허번호	호(종)			(종)
운 전	성 명			생년월	일				
자 2	연 락 처			면허번호	호(종)			(종)
	희망사용기간 (주말 및 공휴일)	띤	월	일 ~	년	월	일	Ŋ	IX
	차량수령희망장소								
내	행 선 지			사용독	극적				
용	탑승인원		명	문화시설	이용				
	기타요청사항								
	차량수령장소 : 안	산시가	정하는	= 수령장	소				

「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1항에 따라 공 용차량 이용을 신청합니다.

<이용자 등의 준수사항>

- 1.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26세 이상만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·운전금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(사망)나 재물 ┃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(사망)나 재물 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 사유를 안산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이용자(운전자)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
신청자: (서 명)

안산시장 귀하

■ 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[별지 제1호서식]

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(이용자:윤전자작

성)

				이용자 자격 명				
01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	-		
용 자	연 락 처			주 소				
운 전	성 명			생년월일				
자 1	연 락 처			면허번호(종)			(종)
운 전	성 명			생년월일				
자 2	연 락 처			면허번호(종)			(종)
	희망사용기간 (주말 및 공휴일)	년	월	일 ~ 년	월	일	ות	ال.
	차량수령희망장소							
내	행 선 지			사용목적				
용	탑승인원		명	문화시설이용				
	기타요청사항							
	차량수령장소 : 인	산시가	정하는	는 수령장소				

「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1항에 따라 공 용차량 이용을 신청합니다.

<이용자 등의 준수사항>

- 1.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 자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·운전금
 - 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 사유를 안산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이용자(운전자)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
(서 명) 신청자:

안산시장 귀하

■ 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[별지 제3호서식]

생생카셰어 차량 운행일지

										담딩	자	틷	심장	
20	년	월	Ç	일 (요일) ~	월	일 (요'	일)					결 재
Ā	h량번호	<u> </u>				전일-	누계		km	유류	전	일양		l(%)
신 청 자	Ĺ	소										급유량 (충전량)		l(%)
	성 (연락 2전자	_	ļ.,	I	-) !자 성명	금일	운행		km	수 불 현 황	소	비량		l(%)
	(연락:				년락처)	누	계		km	황	남	은양		l(%)
é	· 하자자		용	l 응무	목적지	차	량 인	! 수	Ţ	· 량 '	입 :	2.	서	명
						ç	일 /	시 분		일	시	분		

그 밖에 (건의)사항

이용자(운전자) 준수사항

- 1. 공용차량은 <u>만26세</u>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운전은 <u>만26세</u> 이상이며 시장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 자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·운전금 지.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·상해나 재물 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.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, 발생하는
- 모든 책임은 이용자 부담.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차
- 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 7. 차량수령시간(수령일): 08:00~12:00 차량반납시간(반납일): 14:00~18:00
- 8. 이용자(운전자)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(운전자)의 부담으로 한다.

※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

- 1.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(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)
- 2.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(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)
- 3.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
- 4. 보험회사 사고접수(○○○, ○○○○-○○○) 및 보험회 사 출동 현장 확인
- 5. 사고내용 보고 : ☎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, ○○○○, ○

■ 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[별지 제3호서식]

생생카셰어 차량 운행일지

								_				_
								담딩	자	틷	장	
												결 재
20	년 :	월	일 (요일) ~	월 일 (요'	일)					
朿	·량번호								저	일양		l(%)
	전일-			전일누계		km		12	≥ 8		ε(%)	
신	주 소				_	유 류	급유량			0(0/)		
신 청 자	성명				70.00				(충전량))	l(%)
	(연락차		1 -	-)	금일운행 km			수불 현황	A = L			4/0/)
윤	전자 성			자 성명				현 황	소비량			ℓ(%)
L	(연락처)	(6	(연락처) 누계					001		4/0/)	
							km		남	은양		ℓ(%)
승	차자		용무	목적지	차 량 인	<u></u> 수	Ţ	· 량 '	입 :	2	서	명
				일	기 분		일	시	분			

그 밖에 (건의)사항

이용자(운전자) 준수사항

- 1. 공용차량은 <u>26세</u>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운전은 <u>26세</u> 이상 이며 시장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 자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·운전금 지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·상해나 재물 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치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- 7. 차량수령시간(수령일) : 08:00~12:00 차량반납시간(반납일) : 14:00~18:00
- 8. 이용자(운전자)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(운 전자)의 부담으로 한다.

※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

- 1.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(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)
- 2.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(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)
- 3.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
- 4. 보험회사 사고접수(○○○, ○○○○-○○○) 및 보험회 사 출동 현장 확인
- 5. 사고내용 보고 : ☎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, ○○○○, ○

■ 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[별지 제5호서식]

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(이용자·운전자작성)

						수령 소					
이 용	성	큠0			생년	월일					
공 자 	연	락 처			주	소					
운 전	성	명			생년	월일					
자 1	연 5	락 처				면허 호					
운 전	성	큠이			생년	월일					
자 2	연 5	락 처				면허 호					_
	사용	기간	년	월	일	ح ا−	1 :	월 일	일 끼	바지	_
	차	종			차량	수령	일	시	분	서명	4
내	(차량	·번호)			차량	반납	일	시	분	서명	#
	 관광기	지배정			카드	수령	일	시	분	서명	#
용		·드번호)			카드	반납	일	시	분	서명	#
	행신	선지			사용	목적					_
	탑승	인원		명	특 01	사항					

<이용자 등의 준수사항>

- 1. 공용차량은 <u>만26세</u>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<u>만</u> 26세 이상만 운전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자(운전자)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 (대여)·운전금지.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 해(사망)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 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(운전자)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의 사유를 안산시에 은 폐하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(운전자)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 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 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
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이용자: (서 명)

|안산시장 귀하

■ 「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[별지 제5호서식]

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(이용자·윤전자작성)

						차량 장	수령 소					
이용	성		명			생년	월일					
자	연	락	처			주	소					
운 전	성		명			생년	월일					
자 1	연	락	처			운전 번	면허 호					
운 전	성		명			생년	월일					
자 2	연	락	처				면허 호			·		
	사된	를기	간	년	월	일	⊸ ك	1	월	일 낐	가지	
	차		종			차량	수령	일	시	분	서	명
내	(차림	불번	호)			차량	반납	일	川	분	서	명
	관광	 지t	 배정			카드	수령	일	YI	분	서	명
용	(이용:					카드	반납	일	YI	분	서	명
	행	선	ΣI			사용	목적					
	탑성	들인	원		명	특이	사항					

<이용자 등의 준수사항>

- 1. 공용차량은 <u>26세</u>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<u>26세</u> 이상만 운전가능.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 금 등은 이용자(운전자) 부담.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 (대여)·운전금지.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 해(사망)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 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(운전자) 부담.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의 사유를 안산시에 은 폐하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(운전자)부담.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 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 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
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이용자: (서 명)

안산시장 귀하

제16조(「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보건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~ 6. (생 략)	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
7.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65</u> <u>세</u> 이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 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	7 <u>65</u> 세
8. · 9. (생 략)	8. ·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「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원대상)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	제2조(지원대상) ①
(이하 "예방접종"이라 한다) 지원	
대상자(이하 "대상자"라 한다)는	
1년 이상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	
다.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	
<u>65세</u> 이상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	<u>65세</u>
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「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안산시(이하	제5조(지원 대상)
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	
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	
수 있다.	
1. <u>만 60세</u> 이상의 시민	1. <u>60세</u>
2. · 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「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・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				
제7조(이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	제7조(이용료의 감면) ①	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		
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.				
1. 전액감면	1				
가. 보호자와 동행하는 <u>만 2세</u> 이	가 <u>2세</u> -				
하 유아					
나. · 다. (생 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				
2. 100분의 50 감면	2			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		
바. 관외에 거주하는 <u>만 18세</u> 이	바 <u>18세</u> -				
하의 아동·청소년					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			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		

제20조(「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여성청소년"이란 안산시에 주	2
민등록이 되어있는 <u>만11세 이상</u>	<u>11세 이상 18세</u>
<u>만18세</u>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.	